

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0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7월

발 의 자 : 정병용 의원

1. 제안이유

- 하남시에 정원(지방정원, 국가정원)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여가·문화 확립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,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정원이 가지는 효과
 - 환경적 기능으로 대기 정화, 열섬 완화, 생태계복원
 - 사회적 기능은 시민 휴식 공간 제공 및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
 - 문화·경제적 기능은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방문을 유도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정원도시의 조성(안 제4조)
- 라.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 시행(안 제5조)
- 마. 정원진흥위원회의 설치 등(안 제6조~안 제10조)
- 바. 지방정원의 운영·관리 및 국가정원의 지정 신청(안 제14조~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다. 관계 법령 발췌서 : 덧붙임
- 라. 기타 사항 : 덧붙임

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하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하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원”이란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.
2. “국가정원”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국가가 조성·운영하는 것과 법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정원을 말한다.
3. “지방정원”이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하남시가 조성·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정원을 말한다.

4. “민간정원”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.
5. “정원산업”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6. “정원문화”란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.
7. “시민정원사”란 식물과 정원시설물 등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,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·관리 및 보전·전시하기 위하여 정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을 말한다.
8. “정원박람회”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.

제3조(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) 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정원 조성과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·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정원산업 활성화와 개발사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 관광자원화 시책을 마련·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정원도시의 조성) ①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,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정원진흥실시계획(이하 “실시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하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(이하 “진흥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정원 조성 현황
3. 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
4. 정원 조성·진흥사업의 지원 범위 및 재원 조달 방안
5. 국내외 모범사례 수집 및 보급
6.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시장은 실시계획의 효과적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·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6조(진흥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진흥위원회를 둔다.

1.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정원문화·정원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 산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구성 및 임기) ① 진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정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정원 관련 전문가
2.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기관단체의 관계자
3. 시민정원사

③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정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 등) ①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, 출석위원
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③ 진흥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심의·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에 관여할 수 없다.

-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·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·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-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·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의 육성 등)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
2. 정원용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·수집·보급 및 관리
3. 정원의 조성·전시 및 유지관리
4.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
5.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, 행사, 강연회 및 정원 박람회 등 정원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간행물 발간
6.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·학·연 공동연구
7. 정원산업 관련 창업지원 및 정원 전문인력의 양성

8. 정원 프로그램 운영 등 정원문화의 활성화
9. 소식지,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
10.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
11. 개발사업과 연계한 정원문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
1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정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정원문화의 확산지원)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.

1. 일상생활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
2.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
3.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
4.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

제12조(민간정원의 개방 등)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

제13조(시민정원사의 양성 등)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, 시민 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.

제14조(지방정원의 운영·관리)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등 정원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지방정원에 대하여 도시공원, 녹지 등과 연계하여 녹색생태권 재생 및 생태관광의 모범이 되도록 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(국가정원의 지정 신청 등) ① 시장은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림청에 조성 건의할 수 있으며, 지방정원을 대상으로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원문화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(포상) 시장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단체 등에 대하여 「하남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 자료

1 관련 법령 발췌

○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[조례안 제2조(정의)]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. 20., 2016. 12. 2., 2019. 1. 15., 2020. 12. 22., 2021. 4. 13., 2023. 3. 21., 2023. 8. 8., 2024. 1. 2., 2024. 2. 6., 2026. 3. 31.>

1. “수목원”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·증식·보존·관리 및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,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·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.

가.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

나.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

다. 화목원·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

라.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시설

1의2. “정원”이란 식물, 토석, 시설물(조형물을 포함한다) 등을 전시·배치하거나 재배·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(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유산,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.

○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[조례안 제2조(정의)]
제4조(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)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립수목원: 산림청장이 조성·운영하는 수목원

2. 공립수목원: 지방자치단체가 조성·운영하는 수목원

3. 사립수목원: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·운영하는 수목원

4. 학교수목원: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·운영하는 수목원

② 정원은 조성·운영 주체,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가정원: 국가가 조성·운영하는 정원
2. 지방정원: 지방자치단체가 조성·운영하는 정원
3. 민간정원: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·운영하는 정원

○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[조례안 제7조(민간정원의 개방 등)]

제18조의6(정원의 운영·관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·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4. 13.>

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·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·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4. 13.>

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13.>

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·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13.>

○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[조례안 제8조(지방정원의 운영·관리)]

제18조의6(정원의 운영·관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·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4. 13.>

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·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·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4. 13.>

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13.>

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·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13.>

○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[조례안 제9조(국가정원의 지정 신청 등)]

제8조의3(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)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정원의 국가 정원 지정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. <개정 2019. 7. 16., 2021. 6. 22., 2024. 7. 2.>

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9. 7. 16., 2021. 6. 22.>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표 2의3에 따른 국가 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7. 2.>

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국가 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·조경·정원·원예 등 정원의 조성·관리 분야에 관한 8명 이상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이 경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신설 2025. 6. 25.>

⑤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. <개정 2019. 7. 16., 2021. 6. 22., 2025. 6. 25.>

⑥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7. 16., 2021. 6. 22., 2025. 6. 25.>

※ 국가 정원 지정 요건 [수목원 정원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 별표]

■ 수목원 정원법 시행령 [별표 2의3] <개정 2024. 7. 2.>

국가 정원 지정요건 (제8조의3제1항 관련)

1. 지방정원의 면적 및 구성,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이 별표 1의2제1호에 따른 국가 정원의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할 것

2. 조직 및 인력: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

가.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

나. 정원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정원 관리 전담 인력이 8명 이상일 것

다. 별표 2의4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정원 전문 관리인을 정원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10만 제곱미터당 1명 이상 둘 것

라. 해당 지방정원의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·관리하고 있을 것

3. 지방정원의 운영실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

가.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날(등록 이후정원면적에대한변경등록이있는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날을말하며, 정원 면적에 대한 변경등록이 두 차례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변경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)부터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을 것

나.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 · 관리에 관한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것

2 타 시·군 조례 제정 현황

(2026. 7. 1. 현재)

연번	자치단체명	법 규 명	제·개정 일	소관부서	비고
1	경기도	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	2026-01-07	기후환경 에너지국 정원산업과	
		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	2025-3-12	기후환경 에너지국 정원산업과	
		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	2025-8-12	기후환경 에너지국 정원산업과	
		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	2022-10-14	환경사업소 생태공원 녹지과	
		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3-4-12	경제산업국 산림과	
		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5-7-4	도시주택국 정원도시과	
		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 한 조례	2025-10-14	공원녹지 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	
		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4-5-8	환경교육국 정원산림과	
		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3-9-27	환경관리사업소 공원녹지과	
		의정부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 한 조례	2025-5-9	건강삶은도시국 도시정원과	
		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6-4-10	경제환경국 산림공원과	
		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5-3-17	공원녹지사업소 보타닉가든 추진단	
2	부산 광역시	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5-08-13	푸른도시국 공원녹지과	
3	강원특별 자치도	춘천시 정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4-11-19	건설국 녹지정원과	
4	강원특별 자치도	인제군 정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5-03-13	도시건설국 산림정원과	
5	전라남도	신안군 지방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3-10-10	농업기술센터 정원산림총괄과	
6	경상북도	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1-11-17	경상북도 구미시	